

공 고

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17-942호

연희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대한 주민공람 실시

우리구 구산동 307-1번지 연희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(연희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)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 신청서 및 관련 서류에 대한 공람을 실시하오니, 공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은 공람 기간 내에 은평구 건축과에 공람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2017년 07월 27일

은 평 구 청 장

1. 사업의 명칭 : 연희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
2. 사업 시행자 : 연희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(조합장 : 최덕희)
3. 사업부지 :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307-1번지 (정비구역면적 : 4,838㎡)
4.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내용
 - 연 면 적 : 15,924.88㎡ (용적률 249.94%)
 - 건축면적 : 917.57㎡ (건폐율 18.97%)
 - 건축규모 : 지하1층/지상20층, 공동주택(아파트 2개동, 총 146세대) 및 부대복리시설
 - 세부내용 : 공람장소에 비치된 관련 도서 참조
5. 공람기간 : 2017. 07. 27. ~ 2017. 08. 10.
6. 공람장소
 - 은평구청 건축과(☎ 02-351-7533) 또는
 - 연희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사무실 [서오릉로 253 라동 지하 305호 ☎02-3157-4991]
7. 공람의견 제출기한 : 2017. 08. 10.
8. 공람의견 제출장소 : 은평구청 건축과
9. 참고사항 : 공람중인 사업시행계획(안)은 행정절차 이행 및 검토 결과에 따라 그 내용이 변경되어 사업시행변경인가 될 수 있음. 끝.

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17-947호

서울특별시 은평구 누리소통망 등 설치·관리·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7년 7월 27일

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

서울특별시 은평구 누리소통망 등 설치·관리·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정이유

- 가. 인터넷, 페이스북 대중화에 따라 온라인 소통확대 및 소셜미디어(SNS)를 이용한 소통이 새로운 홍보 매체로 부각됨에 따라 행정기관에서도 적극 활용 필요.
- 나. SNS 활성화를 통한 민·관, 주민 상호간에 소통기반 마련.
- 다. SNS를 활용한 이벤트 참여자에 대한 경품 등 제공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참여율을 높이고, SNS 게시물 유지·삭제 및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운영지침 마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에 대한 규정(안 제1조, 제2조)
- 나. 누리소통망(SNS) 등 계정의 개설 및 운영 규정(안 제3조)
- 다. 이동통신 정보서비스 운영 규정(안 제4조)
- 라. 게시물의 관리에 관한 규정(안 제5조)
- 마. 누리소통망(SNS) 등의 활용 규정(안 제6조)
- 바. 기자단 운영·자격·활동비 지원·표창에 관한 규정(안 제7조~제10조)
- 사. 개인정보 보호 규정(안 제 11조)
- 아. 누리소통망(SNS) 등 운영의 위탁 규정(안 제12조)
- 자. 시행규칙 규정(안 제13조)